

인천지방법원 2023. 5. 26 선고 2021가합6264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

담당변호사 김광수

피 고 1. B

2. C

3. D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대륜

담당변호사 김수경, 임성원, 박종우

변 론 종 결 2023. 4. 21.

판 결 선 고 2023. 5. 26.

주 문

1. 피고 B은 원고에게 222,587,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10. 1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피고 C,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C,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 및 피고 B과 피고 C, D 사이에 별지 증여목록 기재 각 일시에 같은 목록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 원고에게, 피고 C는 169,907,850원, 피고 D은 52,680,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피고 B은 원고에게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2014. 6. 23.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, ‘E’이라는 상호로 가구도장업(이하 ‘이 사건 사업장’이라 한다)을 운영하였다. 피고 B은 2019. 9. 5.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하였다.

나.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로 되어 있는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세금, 보험료 등 합계 222,587,850원(이하 ‘이 사건 세금 등’이라 한다)을 부담하게 되었다.

다. 피고 D은 피고 B의 아들이고, 피고 C는 피고 D의 처로 피고 B의 며느리이다.

라. 피고 B은 별지 증여목록 기재 각 일시에 같은 목록 기재 각 금원을 피고 B이 관리하고 있던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사업장 계좌에서 피고 C, D 명의 계좌로 각 이체(이하 통틀어 ‘이 사건 계좌이체’라고 한다)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리면서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세금과 보험료 등은 실제 운영자인 자신이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.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약정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세금 등 222,587,8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1. 10. 1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

1) 피고 B은, 원고가 아직 체납된 이 사건 세금 등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,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또는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, 상대방에게 그 채무액과 동일한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는 그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,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임을 요하는데(대법원 1992. 11. 27. 선고 92다29948 판결 참조), 국가의 조세권 발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조세가 부과되고 이에 대한 불복쟁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지자는 납세의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, 채무부담 역시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그 해당 세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지 않으면 아니 된다(대법원 1991. 10. 11. 선고 91다14604 판결 등 참조).

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,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 등 222,587,850원이 부과되었고,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불복기한을 이미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,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금 등

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 등에 대한 채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,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2) 피고 B은,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할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세금 등 대납을 위하여 매월 1,000,000원 내지 1,500,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, 이에 해당하는 금원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 B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.

3. 피고 C,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피고 B은 무자력인 상태에서 피고 C, D에게 이 사건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 C에게 합계 169,907,850원, 피고 D에게 합계 52,680,000원을 각 증여하였으므로, 위와 같은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,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C는 169,907,850원, 피고 D은 52,680,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피고 B이 피고 C 명의 계좌로 169,907,850원, 피고 D 명의 계좌로 52,680,000원을 각 계좌이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.

그러나 피고들이 직계존비속 등 가족관계에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계좌이체를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, 이 사건 계좌이체에 사용된 돈이 피고 C, D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피고 B이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것에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있다. 그런데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피고들은 피고 B이 이 사건 사업장 계좌가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아들인 피고 D과 며느리인 피고 C 명의의 각 통장에 돈을 옮겨놓고 이를 인출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이지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,

실제로 피고들 명의 계좌로 이체된 돈 중 상당액이 이 사건 사업장의 국세, 전기요금, 직원 급여, 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되거나 다시 이 사건 사업장 계좌로 이체된 점, 그 밖에 이 사건 계좌이체의 기간, 빈도, 회당 이체금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좌이체가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피고 C,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지후, 판사 오승준, 판사 인자한